

瑞山市各種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7.10.23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1997.10.24
- 라. 上程日字 : 1997.11. 1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總務課長 朴相龍)

가. 提案理由

-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실비변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현행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, 회의 출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으므로,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없음

5. 討 論 : 없음

6. 少數意見 : 없음

7. 審査結果 : 원안 가결

제안번호	제 159 호
의결년월일	1997. . . (제 회)

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7. 10. 23

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10.23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제안이유

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
참고사항(관련법 발췌)

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일비”를 “수당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수당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산시각종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<u>일비 및 여비(이하 "실비변상" 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.....</p> <p><u>수당.....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3조(일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<u>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수당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<u>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